

김포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793호
----------	--------

제출년월일 2026. 8. 21.
제출자 김포시장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반부패 신고 포상금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신고대상에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1호)
- 나. 국민의 신고 활성화, 중대 비위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위해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에 한해 신고기한을 7 ~ 15년으로 규정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나. 관계 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 붙임
-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라.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6. 7. 21. ~ 8. 10. (20일)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2) 부서협의결과
 -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가) 중앙부처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

나) 경 기 도 :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

김포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상근인력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

다. 시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신고는”을 “신고기한은”으로, “있는 날로”를 “있는 날”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5년”을 “신고기한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조리 행위가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신고기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감사관
입 안 자	담당관·과장·소장 성명	감사관 이 기 욱
	팀장 직위·성명	청렴인권팀장 박 현 지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서기 이 경 학(☎2782)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공무원 등”이란 <u>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과 상근인력 및 시가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말한다.</u>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u>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상근인력</u>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u>공사·공단의 임직원</u> 다. <u>시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u> 라. <u>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u>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제4조(신고기한)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해당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	제4조(신고기한) ① ----- <u>신고기한은 ----- 있는 날-----</u> -----. -----

는 5년 이내로 한다.

<신 설>

신고기한을 5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조리 행위
가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
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신고기한으
로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은행
 2. 공기업
 3.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併科)한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김포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과 상근인력 및 시가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말한다.
2. “부조리신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나.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다.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강요·유인 행위
 - 라.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3. “포상금”이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부조리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신고) ① 부조리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다.

② 부조리신고는 시의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우선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신고기한)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해당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제5조(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① 부조리신고를 받은 시장은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③ 신고자 외에 진술이나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조력한 사람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신고에 대한 심의·결정)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공직자 윤리법」의 취지를 살려 김포시 공직자 윤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내용의 정확성
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3. 신고한 내용이 부조리 행위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심의

③ 포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의 결정은 혐의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대상)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조리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제8조(포상금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신고에 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한 사항
3. 신고사항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된 사항
4.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된 사항

제9조(포상금 지급)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포상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8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IV. 개선방안

1 신고대상에 자치단체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

- 부조리 신고대상에 자치단체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 지방공기업, 출자출연·보조금 지원기관, 임원 선임·위촉·선임 동의·추천 등을 하는 기관 중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 임직원 포함
 - ※ 공직유관단체뿐 아니라 공직유관단체에 포함되지 않은 출자·출연·보조금 지원 기관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는 기관은 범위 축소 불필요

신고 대상자 개선 예시

[신고대상인 공직자나 공무원 등의 범위]

- 00시 소속 공무원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
- 시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 시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 포항시는 공무원 외 공무직 등 상근직원, 출자출연기관, 의회 의원까지 부조리 신고대상에 포함하는 등 신고대상자를 폭넓게 규정하여 운영

< 신고 대상자 넓게 규정한 사례 >

[「포항시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4. 30.>

1. "공직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소속 공무원 및 상근인력

나. 포항시의회의원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

2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 징계시효 기준 이상으로 확대

- 신고기한이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보다 짧게 규정된 경우 신고기한을 연장
 - 일반 부조리는 3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부패와 관련된 부조리는 5년으로 신고기한 설정

징계시효에 부합하는 신고기한 예시

[「광주광역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정보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신고기한)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는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재산상 이득,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신고기한)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행위일로부터 5년 되는 날까지로 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제4조(신고기한)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참고] 「지방공무원법」 징계시효 규정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제69조의2(징계부가금) ①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개선 대상은 지방공무원 징계시효보다 신고기한이 짧게 규정된 99개 기관

< 신고기한 개선 필요 기관 현황 >

기관 유형별	자치단체명	현행 조례 상 신고 기한
광역 자치단체 (4)	충청남도	1년
	충청북도, 대구광역시	2년
	전라북도	2년(일반), 5년(금품향응)
시·도 교육청 (11)	강원교육청, 경남교육청, 경북교육청, 대구교육청, 대전교육청, 세종교육청, 인천교육청, 전남교육청, 전북교육청, 충남교육청, 충북교육청	2년
기초 자치 단체 (84)	경남 통영시	6월
	경기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오산시, 포천시, 광주 광산구, 부산 강서구, 인천 남동구, 전남 강진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신안군, 영광군, 완도군, 해남군, 전북 고창군, 남원군, 익산시, 장수군, 충남 태안군	1년
	강원 영월군, 화천군, 경기 군포시, 경남 창원군, 하동군, 경북 김천시, 영주시, 광주 남구, 대구 중구, 인천 강화군, 전북 진안군, 충남 공주시, 천안시, 청양군	2년
	경기 안산시, 양주시, 경남 남해군, 경북 경산시, 칠곡군, 광주 북구, 대구 남구, 달서구, 북구, 서구, 대전 대덕구, 서울 광진구, 금천구, 마포구, 성동구, 성북구, 영등포구, 종로구, 인천 부평구, 서구, 연수구, 중구, 충남 당진시, 충북 옥천군	3년
	전북 김제시	1년(일반), 3년(금품향응)
	충남 아산시	1년(일반), 5년(금품향응)
	전북 정읍시, 충북 영동군	2년(일반), 3년(금품향응)
	강원 원주시, 경기 광주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안성시, 연천시, 용인시, 파주시, 하남시, 광주 서구, 서울 서대문구, 전북 군산시, 충남 계룡시, 서산시, 예산군, 충북 단양군,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2년(일반), 5년(금품향응)

- 국민의 신고 활성화, 중대 비위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위해 중대 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에 한해 신고기한을 없애거나 7~15년으로 설정하는 방안 검토

※ 「형법」상 뇌물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7년 이상, 1억원 이상인 경우 10~15년 등의 공소시효 적용

- 검토 대상은 신고기한이 설정된 179개 기관(17~18쪽 참조)

[참고] 신고기한을 설정하지 않은 기관 : 총 22개

- (광역 자치단체) 강원, 경기, 경남, 대전, 서울, 세종, 인천, 제주 등 8개
(시·도 교육청) 경기교육청, 부산교육청, 서울교육청 등 3개
(기초 자치단체) 강원 동해시, 경남 거창군, 경남 사천시, 경남 산청군, 경남 진주시, 경남 창원시, 경남 함안군, 부산 금정구, 서울 강서구, 서울 관악구, 서울 노원구 등 11개

3 신고자를 지역주민으로 한정하는 규정을 폐지

- 공직자 부조리 신고자를 지역주민으로 제한하는 규정 삭제

※ 신고자 거주지를 제한한 광주광역시 남구, 전북 장수군이 규정 개선 대상

거주지 제한 없는 규정 예시

[「광주광역시 복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4조(신고 및 신고기한) 제3조에 따른 부조리신고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전주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부패행위 등의 신고)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누구든지 시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